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00시 10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	3
증자, 육묘업 등록	3

종자, 육묘업 등록

2017.07.04 조회수 150 등록자
10:40

- ✓ 민원사무명
종자, 육묘업 등록

- ✓ 민원내용

- ✓ 관계법령

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
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제1항,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,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제2항1호

- ✓ 구비서류

 <종자업등록>
 1.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 증명하는 서류
 2. 종자관리사 1명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작물만 생산판매하는 경우 제외)
 <육묘업등록>
 1.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 증명하는 서류
 2.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

- ✓ 처리부서
농업정책과

- ✓ 협의부서

- ✓ 접수
여수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

- ✓ 수수료
없음

- ✓ 처리기간
7일

- ✓ 기타사항

- ✓ 흐름도
① 신청 → ② 접수 → ③ 서류검토 → ④ 현지확인 → ⑤ 등록증 발급

- ✓ 기타참고사항

첨부파일 전체(zip)다운로드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📎 [별표 5의2] 육묘업의 시설기준(제15조의2 관련).hwp (1575 hit/ 12.5 KB) ↓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5px;"> 미리보기 </div>
--	---

이전글 > 동물 영업 등록 변경신고서(동물판매업, 동물미용... < 다음글 > 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